

2026년도 장애인육상 「선수」 통합포털 등록 안내

가. 등록개요

- 기 간 : ~ 2026. 5. 31.(일) *신규등록자는 상시등록 가능.
- 대 상 자 :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필한 자
- 등록 사이트 :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

나. 등록절차



- 매주 월요일 선수등록 최종 승인 (등록비 입금 확인 후 승인 진행)
* 승인 요일 외에는 승인 불가.

다. 등록비

- 선수등록비 1인 20,000원 [가이드러너 포함]
- 입금계좌 : 하나은행 780-910015-76504 대한장애인육상연맹
- 입금방법
 -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시·도지부일 경우 [시·도](선수 명단 제출)
 - 선수일 경우 [시도_선수이름] *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, 승인이 불가함으로 필히 시도 기재.

라.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

- 모든 선수는 매년 통합포털 등록 필수
- **선수등록은 반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 매뉴얼을 참고하여 등록**
- 시스템 미등록 시 학생체전, 전국체전 및 본 연맹 주최/주관의 대회 참가 불가
- 등록 절차(증비서류 미비 등)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승인 처리 되며, 미승인 시 선수 본인이 통합포털 내 선수 등록 신청 진행상태에서 수정 후 재신청해야 함.
- 미승인 된 선수의 스포츠등급분류카드는 선수가 직접 재첨부가 불가하므로, 시도장애인육상연맹 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요청하여 첨부
- 신규는 등급분류 심사(청각, 지적 제외) 후 등록이 가능하며, 스포츠등급분류카드, 복지카드 (또는 장애인증명서)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불가
- 복지카드 앞,뒤 첨부(장애유형, 유효기간 필수) / 장애인증명서 해당년도 증명서만 가능
- 시각등급분류카드는 2021년 3월 1일 등급분류 심사부터 선수등록 가능 (2021년 3월 1일 전 검사 및 지정 등급분류사 외 등급분류심사는 불인정)

바. 시각 등급분류 예약 세부절차 안내

- 국내 등급분류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원하는 지역 등급분류사 사전 예약 후 방문
- 방문 전 등급분류 양식 내 “선수작성부분” 필히 작성 후 반드시 양식을 지참하여 방문
- 결과지를 필히 통합포털 등급분류 신청 내 '신청종목 필요서류 첨부'란에 첨부

사. 기타사항

- 당해 연도에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자는 심판등록 및 활동을 제한
- 금년도 신규 등급분류심사(시각, 지적, 청각 제외)는 2026. 3. 28.~29. 예정
 - 신규 대상 마지막 등급분류심사이며, 이후, 심사 예정 없음.
- 재등록 심사는 추후 공지 예정
- 통합포털 및 체육사업통합관리 시스템 관리 문의: ☎ 070-5147-2427
- 기타 문의사항: ☎ 02)455-4081 / ✉ kafdkorea@hanmail.net

아. 선수등록 규정

제5조(선수등록구분)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한다. 다만, 연맹 특성에 따라 별도 부를 정할 수 있다. <개정 '24.8.22.>

1. 직장 운동 경기부
2. 일반부
3. 대회동호인부 <개정 '20.2.19.>

② 연맹이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는 각 부별 등록에 따른 연령제한은 하지 않으나 각종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령제한은 대회참가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선수등록)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, 우리연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스포츠 등급분류를 필하고 선수등록을 한다. <개정 '20.2.19.>

1.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<신설 '20.2.19.>
2. 다음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<신설 '20.2.19.>
 - 가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상이자
 - 나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상이자
 - 다.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부상자
 - 라. 지원대상자 중 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의 상이자(2012.6.30. 이전 등록자)

제7조(선수등록 제한 및 취소)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제2항1호에서5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등록을 할 수 없다. <개정 '20.2.19.>

② 등록절차를 마친 선수는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선수등록 시기) ① 등록기간은 매년 5월 31일 이전으로 신규등록한 선수와 신설팀은 예외로 한다. 등록 기간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차기 등록기간까지 선수활동을 제한한다. <개정 '20.2.19, '24.8.22.>

- ② 추가등록기간은 연맹이 결정하고,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. <개정 '24.8.22.>
- ③ 선수는 등록 마감일(추가등록 마감일 포함)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자까지 유효하다. <개정 '24.8.22.>
- ④ 2년 이상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새로이 등록할 경우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며 등록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'20.2.19.>

제9조(선수등록자격) ① 선수등록은 정해진 등급분류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.

- ② 선수 등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1. 직장운동경기부는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자
 2. 일반부, 대회동호인부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 <개정 '20.2.19.>
 3. <삭제 '20.2.19.>

제10조(선수등록비) 선수로 등록하는 자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1조(선수등록자격의 제한) ① 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 국적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여부를 정할 수 있다.

- ② 동일인이 직장운동경기부, 일반부, 대회동호인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. <개정 '20.2.19.>
- ③ 동일인이 종목을 달리하여 선수생활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2 이상의 경기단체에 등록을 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.
- ④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.

제12조(선수등록절차) ①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은 시·도 장애인체육회의 지도·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선수를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'24.8.22.>

1. 선수등록은 우리 연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 소속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'20.2.19.>
 2. 선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수카드를 포함한 선수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.
 3.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은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1차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 란에 확인하여 사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. 다만, 사도장애인육상연맹이 결성되지 않거나 등록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도장애인체육회의 2차 심사로 대체한다.
 4. 시·도장애인체육회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제2차 심사 후 경유 란에 확인하여, 연맹에 최종 심사요청을 해야 한다.
 5. 연맹은 선수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15일 이내에 그 최종심사결과를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통보하고, 필요에 따라 전국연맹체에 통보한다.
- ② 연맹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선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<개정 '24.8.22.>
 - ③ 등록 선수의 기본정보, 경기실적, 상벌사항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자료공개에 대해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 <개정 '24.8.22.>
 - ④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핑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'한국도핑방지규정' 준수 서약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'24.8.22.>
 - 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'20.2.19., '24.0.0.>

제13조(선수 등록지) 선수 등록은 개인 및 단체(팀)가 소속되어 있는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이 없는 경우에는 사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. <개정 '20.2.19, '24.8.22.>

제14조(선수 등록변경) ① 선수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변경사유를 심사·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.
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단체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 1. 소속단체(또는 팀)의 해체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만료
 2. 거주지 변경(생계유지, 직장이직, 가족단위 이사 등 이에 준하는 사항)
-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거주지가 변경되는 선수는 소속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④ <삭제 '20.2.19.>
- ⑤ 이 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등록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(선수구제) ① 선수는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연맹 법제상벌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·조정하여 해당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해당 소속단체장은 의견을 제시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선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이 이적동의서 발급을 부당하게 기피하는 경우, 연맹 법제상벌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일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한다. 이 경우 해당 소속단체장은 구제 결정을 따라야 한다.
- ③ 등록된 선수가 동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선수활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, 그 사실이 기록된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, 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연맹 법제상벌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구제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④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맹은 선수의 요청에 따라 즉시 부당등록을 시정하여야 한다.
- ⑤ 선수가 연맹으로부터 받은 최종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장애인체육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16조(선수활동의 자격) 연맹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장애인육상의 선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. <개정 '24.8.22.>

제17조(선수활동의 제한) ① 연맹은 이적을 원하는 선수가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변경일로부터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2년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한다.

- ② 유사단체 선수에 대한 등록 및 대회 참가는 연맹의 실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선수등록을 마친 자라 할지라도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의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.

<개정 '24.8.22.>

- ④ 등록된 선수가 연맹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맹의 규정에 따라 선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⑤ 제12조 절차에 의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자가 연맹의 최종 확정이 되지 아니한 자는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.
- ⑥ <삭제 '20.2.19.>

제18조(선수활동 제한의 예외)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1. 부상,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연맹이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입원 또는 입원이외의 일반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 <개정 '24.8.22.>
2.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(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·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한한다)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자이거나 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
3. 계약의 만료 또는 사직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 발급 기피로 인하여 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로부터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
4. 외국에서 귀국한 자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 신체적성 및 경기력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이 월등하거나, 우수선수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과 시·도장애인체육회장의 추천으로 연맹 법제상벌위원회가 승인한 자